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규약

[시행 2022.4.26.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 노동조합(이하 “조합” 이라한다)은 ‘영덕군청공무원노동조합’ 이라 하고 약칭은 ‘영덕군청공무원노조’ 라 한다.

제2조(목적) 본 규약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업무능력향상, 근무환경개선, 고충처리, 우호증진 등 복지증진과 사회경제적 지위향상, 군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며 나아가 군정 및 지역공동체 발전과 참 공직문화 정착, 공직자의 사회개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불합리한 행정제도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조합원의 근무환경개선·업무능력 향상 및 후생복지 증진사업
3. 조합원의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
4. 조직 강화 및 국내외의 단체와 연대를 위한 사업
5.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
6. 부정부패 추방 등 공직사회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
7. 건전하고 합리적인 노동문화 창출을 위한 사업
8. 조합원의 삶의 질 향상과 군민에 대한 질 높은 서비스제공을 위한 사업
9. 기타 조합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 조합의 사무소는 영덕군청 내에 둔다.

제5조(법인) 조합은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상급단체) 조합의 상급단체는 “경상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및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으로 한다.

제2장 조합원

제7조(자격) ① 영덕군청 소속 공무원은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가입이 허용되는 자에 한한다.

② 조합원이 면직,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단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3항에서 규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영덕군의회 소속 공무원은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단, 2022.1.13. 영덕군청공무원노조에 잔류를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④ 조합은 명예조합원 및 준조합원을 둘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가입 및 탈퇴) ① 조합에 가입(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 서식에 따라 가입(탈퇴)신청서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②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직접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조합에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탈퇴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하여, 조합의 승인으로 그 자격을 상실한다.
- ④ 조합에 탈퇴 후 재가입을 원할 시 또는 가입자격 획득 후 1개월 이내 가입하지 않은 자가 가입을 원할 시에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에 따른 조합비는 탈퇴 또는 이에 준하는 기간 중의 조합비를 완납하여야 한다.

제9조(자격의 상실) 다음의 경우에는 자격을 상실한다.

- 1. 사망한 때
- 2. 퇴직한 때
- 3. 조합에서 제명된 때
- 4. 소정의 절차를 거쳐 조합을 탈퇴 한 때
- 5.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인사발령 등으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명예조합원으로 자동 승계된다.

제10조(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규약과 규정에 따른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다만, 징계를 받은 조합원과 3개월 이상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는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② 모든 조합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 1. 선거권과 피선거권
- 2. 각종 회의에서의 발언권과 의결권
- 3. 조합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권리
- 4. 조합에 건의할 수 있는 권리
- 5. 기타 조합원으로서 권익을 보호받을 권리

③ 조합원은 다음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 1. 조합의 규약, 규정과 결의사항을 준수하고 이행 할 의무
- 2. 의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할 의무
- 3. 조합의 사업과 활동에 참여하고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할 의무
- 4. 조합 활동에 필요한 보안 및 기밀을 준수할 의무
- ④ 준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조합원의 신분보장) 조합원이 조합의 의결기관이 결의한 사항을 준수하고, 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신분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때에는 조합원 신분을 보장하고 조합원 또는 그 가족을 구제한다. 다만, 그 대상,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정에서 정한다.

제12조(징계 및 포상) ①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1. 규약 및 규정을 위반한 자
- 2. 조합의 정당한 결의·지시사항을 위반한 자
- 3. 조직을 교란하여 조합의 명예를 훼손한 자
- 4. 조합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
-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자
- 6. 조합원의 3분의1 이상의 발의로 총회에서 제명 의결된 자

②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명
- 2. 정직(1개월 이상 6개월 이하)
- 3. 경고

③ 징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는 다음의 절차에 따른다.

- 1. 조합원이 징계에 회부되면 10일 이내에 운영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 2. 운영위원회는 징계 당사자에게 징계사유, 징계위원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3. 징계 당사자에게는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 4. 징계 확정시 당사자는 10일 이내에 대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5. 운영위원회는 재심청구 시 10일 이내에 대의원회에 재심을 의뢰하여야한다.
6. 재심은 대의원회의 결의로 확정한다.
- ④ 본 조합의 발전에 공로가 지대한 조합원이나 외부인사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포상할 수 있다.

제3장 기관과 회의

제13조(기관) 조합은 다음과 같은 기관을 둔다.

1. 총회
2. 대의원회
3. 운영위원회
4. 사무국
5. 회계감사위원회
6. 선거관리위원회
7.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8. 고충처리위원회
9. 자문기구

제1절 총회

제14조(구성) ① 총회는 조합의 최고 의결기구로서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단,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총회기능의 전반사항을 대의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 조합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제15조(소집)

-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한다.
- ②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2. 조합원의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
- ③ 총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총회의 공고방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공고(전자문서 시스템 포함) 또는 기타 공고문으로 소집할 수 있다.
- ⑤ 소집공고 된 내용의 변경은 개최일로부터 3일 전에 변경공고 하여야 하고 단,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⑥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서면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단, 개최요건, 방법, 시기 등에 대해서는 대의원회 회의에서 정한다)

제16조(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의 제정과 변경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거와 해임(탄핵)에 관한 사항
3.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6.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
7. 합병·분할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8.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한 사항

제2절 대의원회

제17조(구성) ① 본 조합은 총회에 갈음하여 대의원회를 두며 위원장은 당연직 의장이 된다.

② 대의원은 부서별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추천한다.

③ 대의원 배정비율은 부서별로 조합원 및 준조합원 수가 20인 미만 1명, 20명 이상일 때 초과인원 수가 20명 이상이면 1명씩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보건소는 보건소 본청 1명, 지소1명, 진료소 1명씩을 각각 둔다). 단 1개 사업소에 2개과가 있으면 각 과별로 대의원을 둘 수 있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전보 등으로 부서를 옮길 경우 대의원의 자격을 상실하며, 대의원이 결원된 부서에서는 10일 이내에 대의원을 추천해 조합에 통보해야 한다.

제18조(소집) ① 대의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개최일 7일까지는 회의에 부의할 사항과 일시 및 장소 등을 명기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대회는 회개최일 7일전까지 그 회의에 부의할 사항을 공고하고 규약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공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9조(기능)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의 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2. 규약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각종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예비심사 및 자산과 기금의 설치·관리 또는 처분에 관한 사항
5. 선거관리위원장의 임명동의에 관한 사항
6. 회계감사위원회 구성 및 위원 임명 동의에 관한 사항
7. 조합원의 징계(제명,정직,경고) 재심에 관한 사항
8. 상벌에 관한 사항
9. 추경예산 승인에 관한 사항
10. 상급단체 가입과 탈퇴에 관한 사항
11. 기타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및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절 운영위원회

제2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당연직 의장이 되고, 수석부위원장, 부위원장, 사무국장, 사무차장, 각 부장으로 구성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각 부의 차장까지 포함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직렬별 대표위원을 임명하고 운영위원회에 포함할 수 있다.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21조(소집)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정기 운영위원회 : 월 1회
2. 임시 운영위원회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운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제22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 및 대의원회의 수입 사항
2. 기관장과의 협의 및 교섭내용에 관한 사항
3. 규약 및 규정 해석에 관한 사항
4. 총회, 대의원회 준비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6. 노동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
7. 사업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보고에 관한 사항
8. 회비징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 조합원의 복지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상근직원 채용 및 임금 확정에 관한 사항
12. 선거관리위원회 및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13.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

제4절 사무국

제23조(구성) ① 위원장 직속으로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사무국장을 두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기타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24조(사무국장의 직무)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사무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제25조(전임자의 배치) 사무국에 두는 사무국 구성원의 배치기준, 임면, 보수와 고용조건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할 경우, 별도규정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6조(기능) 사무국은 다음 사항을 집행한다.

1. 분장된 사무에 관한 집행
2.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의 수입사항 집행
3. 각종 회의 부의안건 및 회의준비에 관한 사항
4. 조합원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집행업무에 관한 사항

제5절 회계감사위원회

제27조(구성 및 기능) ① 회계감사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된 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연 1회 이상 회계 및 조합운영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감사위원회는 감사결과에 대해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진술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회계사항을 감사하고 그 결과를 조합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원회에 보고하였을 때는 조합원에게 공개한 것으로 본다.

⑤ 감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절 선거관리위원회

제28조(구성 및 기능)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5인 이내의 선거관리위원으로 구성하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에 관한 규약 및 규정의 해석권을 가지며,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및 중재 등 선거사무와 관련된 일체 사항을 관장한다.

③ 선거관리 및 선거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 규정으로 정한다.

④ 선거관리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7절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

- 제29조(구성 및 기능)** ①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4인 이내의 희생자구제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희생자구제심사위원장은 희생자구제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는 희생자구제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
- ③ 희생자구제 및 희생자구제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 ④ 희생자구제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절 고충처리위원회

제30조(설치) 조합원이 각종 인권침해사항 및 상사로부터 폭언·폭행과 인신 모독적 행위 및 성폭력, 성추행으로부터 보호 및 지원할 수 있도록 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1조(구성) ① 고충처리위원회는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과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위원장이 임명한다.

② 고충처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2조(기능) 고충처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며 기관장에게 시정·문책 또는 사법기관에 고발을 요구하거나 직접 사법기관 등에 고발할 수 있다.

1. 징계처리에 있어 불공정하거나 형평에 어긋난 처분시
2. 상사로부터 부당한 압력이나 강요에 의한 업무처리 사항
3. 직장 내의 성희롱, 성추행 등 행위시
4. 상사로부터 폭언·폭행 등 인신 모독적인 행위시
5. 인권부에서 조사를 요구한 사항
6. 기타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절 자문기구

제33조(고문의 위촉) 고문은 본 조합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명망이 있는 공무원 중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위원장이 위촉한다.

제34조(자문위원회) ① 조합운영에 따른 고충문제 자문과 조합발전을 위하여 지역유력인사, 퇴직공무원 등 사회적 명망이 높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장과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조합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절 명예조합원

제35조(역할) ① 영덕군청 공무원 중 제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자는 명예조합원 또는 준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회비를 납부할 수 있다.

② 법적 한도 내에서 영덕군청 공무원 노동조합원과 동등한 대우와 보호를 받는다. 단, 명예조합원은 조합의 의사결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절 회의

제36조(회의의 성립과 의결 정족수) ① 조합의 각종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로 성립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다음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약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
- ③ 규약의 변경과 임원의 선거·해임에 관한 사항은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다.

제4장 임원

제37조(임원) 조합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위원장 1명
2. 수석부위원장 1명
3. 부위원장 4명 이내(여성부위원장 1명 포함)
4. 사무국장 1명

제38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위원장
 - 가. 조합을 대표하고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 나. 총회, 대의원대회, 운영위원회를 소집하며 의장이 된다.
 - 다. 공문의 서명인이 되며, 각종 간행물의 발행인이 된다.
 - 라. 단체교섭의 대표자가 되며,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마. 규약의 해석권을 가지며, 이는 총회에서 번복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 바. 운영위원의 장 등을 임면한다.
2. 수석부위원장 및 부위원장
 - 가. 수석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 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수석부위원장 또는 사무국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사무국장
 - 가.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일상 업무를 집행하고, 사무국의 제반업무를 관리한다.
 - 나. 조합의 예산을 집행하고 재산을 관리, 운영한다.
 - 다. 총회에서 제반 활동과 결산을 보고한다.
 - 라. 사무국 구성원의 임면을 위원장에게 제청한다.
 - 마. 위원장 및 부위원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39조(임원의 선출) ① 본 조합의 위원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② 위원장은 전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와 최다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선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120일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한다.
- ④ 선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0조(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1조(임원의 불신임) 임원이 직무수행에 있어서 규약을 위반한 때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로 대의원회에서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제5장 재정

제42조(재정) ①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이 납부하는 의무금과 기타 수익금(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② 의무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조합비 : 가입한 달로부터 매월 기본금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단, 상한액은 30,000원으로 한다.
 2. 기금 : 총회에서 의결된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액
 3. 특별부과금 : 운영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부과하는 금액
- ③ 조합비 납부일은 매 급여일로 하며, 원천징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43조(회계)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건전재정과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회계규정을 둔다.

- ③ 위원장은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 및 운영상황 등 회계의 일체에 관한 사항을 표시한 회계보고서를 감사 의견을 첨부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④ 공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전자문서로 공고 할 수 있다.

제44조(상조기능) 조합원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 조합원 경조사시 상조금을 지급할 수 있고 적용범위 및 지급금액은 별도 규정으로 한다.

제6장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제45조(단체교섭) ① 위원장은 모든 교섭의 대표자가 된다.

- ② 교섭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운영위원회에서 지명한 조합원 10인 이내로 한다.
- ③ 위원장은 단체협약 체결 후 대의원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 및 중재를 신청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7장 해산 및 청산

제47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 1. 조합원이 모두 탈퇴하였을 때
- 2. 규약에 의하여 해산이 의결되었을 때
- 3. 합병 또는 분할로 소멸한 경우
- ② 조합의 해산은 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제48조(청산규정) 조합이 해산이 결의되었을 때는 해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한다.

제49조(잔여재산 등 귀속) 본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에 잔여재산과 업무 등 일체의 권리는 총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50조(통상관례) 규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통상관례에 따른다.

부칙 [2019.2.13.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제정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승계) ① 규약 시행 전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조합에서 결정한 것으로 보며 별도의 의결이 없는 한 유효하다.

- ② 영덕군청공무원직장협의회 회원 및 업무와 자산 등 일체를 승계하며 제반 권리, 의무를 가진다.
- ③ 현 직협회장은 잔여임기 동안 위원장 직을 수행한다.

제3조(조합가입의 효력)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약 시행 이전에 조합설립을 예정하고 조합 가입원을 조합 설립 이전에 제출한 자는 이 규약에 의하여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21.4.5.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2.4.26.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약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